

## “만연방지 중점조치”지정에 따른 오키나와현 대처방침

**【기간】4월 12일(월)~5월5일(수)**

신규 양성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, 4월 9일 정부로부터 “만연방지 중점조치” 적용 대상으로 오키나와현이 지정되었습니다. 기간은 4월 12일~5월 5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.

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 본도 내 9개 시(市)를 만연방지 중점조치 구역으로 지정해, 중점조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현 내 전역에 감염 방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. 4월 22일 미야코지마시에 있었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만연방지 중점조치 구역으로 미야코지마시가 추가되어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시정촌 및 관계단체에는 감염확산방지대책 준수 및 이를 현민 여러분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※나하·중남부지역의 음식점에 대한 오후 9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은 4월 11일을 기해 일단 종료하며 4월 12일부터 새롭게 모든 시정촌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영업 단축을 요청합니다.

**“만연방지 중점조치” 지정에 따른 대책  
4월 12일(월)~5월 5일(수)**

## 현민에 대한 요청(현 내 전역)

【특조법 제24조 9항 : 협력요청】

【특조법 제31조의 6 제1항 : 명령,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요청】

-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할 것(동법 제 24조 제 9항)
- 혼잡한 장소와 시간을 피해 행동할 것(동법 제24조 제 9항)
- 타 현과의 불필요한 왕래는 자제할 것(동법 제 24조 제 9항)
- 이도(離島)와의 불필요한 왕래는 자제할 것(동법 24조 제 9항)
- 단축이 요청된 영업시간 이후, 음식점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을 것(동법 제 24조 제 9항 · 동법 제 31조의 6 제 2항)
- 환영회, 계모임, 비치 파티 등 식사로 이어지는 행사 등은 자제할 것(동법 제 24조 제 9항)
- 회식은 함께 사는 가족과 소수 인원으로 짧은 시간동안 실시하며,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은 이용을 자제할 것(동법 제 24조 제 9항)
- 음식점에서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(동법 제 24조 제 9항)

※방문자 여러분들은 정부의 기본적 대처방침에 따라 각 도도부현에서 외출 자제가 요청되고 있으며, 또한 귀성·여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촉구되고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.

# 지정지역 음식점에의 요청

(나하시, 우라소에시, 기노완시, 오키나와시, 우루마시, 이토만시, 도미구스쿠시, 난조시, 나고시, **미야코지마시**)

【영업시간단축 협력요청】(특조법 제31조의 6 제1항 · 특조법 제24조 제 9항)

기간	2021년 4월 12일(월)(※ <b>미야코지마시는 4월 24일</b> )부터 2021년 5월 5일(수)
대상시설	음식점 및 음식을 수반하는 유흥시설 등※
요청내용	<p><b>(특조법 제31조의 6 제1항에 따른 것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(포장·배달을 제외)</li> <li><b>(주류 제공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)</b></li> <li>○이용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(퇴장을 포함)</li> <li>○아크릴 판 설치 등</li> <li>○위 내용 외에, 특조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(종업원에게 검사 권장, 입장자 정리 유도, 발열 등 유증상자의 입장제한, 손 소독설비 설치, 사업소의 소독, 시설 환기)</li> </ul> <p><b>(특조법 제24조 제9항에 따른 것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현이 실시하는 감염방지 대책추진 순회사업에 협력</li> <li>○환기 철저, 이용자 체온 검사</li> <li>○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</li> <li>○가라오케 시설 이용 자제(가라오케 시설이 있는 음식점 점포)</li> </ul>

※ 유흥시설등이란, 카바레, 나이트클럽, 라이브하우스, 스넥, 댄스홀, 펍 등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.

## 지정지역이외의 현 내 모든 음식점에의 요청

### 【영업시간단축 협력요청】(특조법 제24조 제9항)

기간	2021년 4월 12일(월) 부터 2021년 5월 5일(수)(※미야코지마시는 4월23일까지)
대상시설	음식점 및 음식을 수반하는 유흥시설 등※
요청내용	<p>(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에 따른 것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(포장·배달을 제외) (주류 제공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)</li> <li>○현이 실시하는 감염방지 대책촉진 순회사업에 협력</li> <li>○이용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(퇴장을 포함)</li> <li>○아크릴 판 설치 등</li> <li>○위 내용 외에, 특조법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(종업원에게 검사 권장, 입장자 정리유도, 발열 등 유증상자의 입장금지, 손 소독설비 설치, 사업소 소독, 시설 환기)</li> <li>○환기 철저, 이용자 체온 검사</li> <li>○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</li> <li>○가라오케 시설 이용 자제(가라오케 시설이 있는 음식점 점포)</li> </ul>

※ 유흥시설등이란, 카바레, 나이트클럽, 라이브하우스, 스낵, 댄스홀, 펍 등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.

# 행사 개최에 대한 요청(현 내 모든 지역)

(특조법 제 24조 제9항)

- 주최자에게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시에, 정부의 접촉확인 앱(COCOA), 현이 추천, 장려하는 라인 앱을 이용한 농후접촉자 통지시스템(RICCA)의 도입 또는 명부작성 등의 추적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
- 전국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또는 참가자가 1,000명을 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, 그 행사의 개최요건등에 대해서 현과 사전에 상담할 것
- 전국적인 감염확산이나 행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정부가 업종별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나 수용률요건, 최대수용인원의 검토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응할 것
- 행사 개최의 요건은 아래 내용대로(적절한 감염방지대책이 강구될 것이 전제)

기간	수용률		최대수용인원
4월 5일 ~5월 5일	<b>큰 소리를 내는 합성·성원 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것</b> · 클래식 음악 콘서트, 연극 등, 무용, 전통예능, 예능·연예, 공연·의식, 전시회 등 · 음식을 수반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(※2)	<b>큰 소리를 내는 합성·성원 등이 상정되는 것</b> 록, 대중음악 콘서트, 스포츠 이벤트, 공영경기, 공연, 라이브하우스·나이트클럽 이벤트 등	5,000명 이하
	<b>100% 이내</b> (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)	<b>50%(※1) 이내</b> (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)	

※1 : 다른 그룹 사이에 좌석을 하나 비우면, 같은 그룹(5명 이내로 한정)내에서는 좌석 간격을 두지 않아도 좋다. 즉, 수용률은 50%를 넘는 경우가 있다.

※2 : "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프로그램"은 필요한 감염방지책이 보장된 상태이면서 행사중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에 한해, "큰 소리를 내는 합성·성원 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것"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.

## 경제계에서의 요청(현 내 전역) (특조법 제24조 제9항)

- 종업원에게 단축이 요청된 영업시간 이후, 음식점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것
- 직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, 휴식시간도 포함해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킬 것
- 종업원에게 연수 시의 친목 모임, 환영회 계모임, 비치 파티 등을 피할 것을 요구할 것
- “출근자 수의 7할 삭감”을 목표하는 것을 포함해, 재택근무를 보다 추진할 것. 출근이 필요한 직장이라도 로테이션 근무, 시차근무, 자동차 통근 등의 방침을 추진할 것
- 관광관련사업자는,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, 자주 손 씻기·손 소독, 3밀(밀폐·밀집·밀접)의 회피 등 “새로운 생활양식” 및 “새로운 여행 에티켓”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부탁할 것
-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

## 학교관계에서의 요청(현 내 전역) (특조법 제24조 제9항)

- 어린이와 학생이 가정에서 건강관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, 몸이 안좋을 때는 등교시키지 않을 것
- 부활동, 과외활동, 학생 기숙사에서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킬 것
- 현 교육위원회 등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

## 시설에서의 요청(현 내 전역)

- 박물관, 미술관과 운동시설 등, 현립 공공시설은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을 계속하며 영업시간은 저녁 8시까지로 함. 시정촌립 공공시설 또한 현과 같은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함
- 기타 음식점 이외의 특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으로 규정하는 운동시설, 유기장, 영화관 등의 시설은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철저히 할 것과 시설에 사람이 모여 식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, 입장자의 정리유도와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단축등에 대해 요청함

# 현이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

## ① 감염방지대책 · 인증제도 프로젝트

### 1. 목적

- (1) 위드코로나 사회의 경영환경지원(점포의 감염방지대책 준수 여부를 알림 · 철저히 운용)
- (2) 현민 · 관광객의 위드코로나 대응점포 이용의식 양성

### 2. 인증 순서

- (1) 제1단계 2021년 4월 12일(월)~5월5일(수)  
현 직원을 동원한 순회 지도(인증제도고지 · 정부 음식점 선정 4항목 확인)
- (2) 제2단계 2021년 5월 중순~  
민간위탁 등을 통한 순회 지도(감염대책 체크)
- (3) 감염대책 체크에 따라, 인증 점포에 스티커를 부여

3. 대상점포 ○현 내 전역의 음식점(약 12,000 점포)

### 4. 중장기적인 대책

이번 집중적 실시기간의 실시상황을 토대로 순회체제, 지도내용등의 검증을 실시한 후 민간 위탁등에 의한 전현적(全縣的)이고 지속적인 순회지도체제를 구축해 이후 대상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

### 5. 오키나와현의 특징

- (1) 단축 영업 요청 대상인 모든 음식점을 순회 지도해, 감염대책 체크 후에 인증 스티커를 부여
- (2) 인증 스티커 부착 뒤에도 순회지도를 실시